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 
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남완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사회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」

## 검토보고서

### 1. 경과

의안 제622호로 2025년 10월 2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정비·점검·교육 및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5. 10. 2.~2025.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폭우로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영등포구 역시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5,273채,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, 2023년 문래동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.
- 도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낙엽, 쓰레기 등으로 인한 빗물 받이 막힘이 지목되고 있으며, 이는 차량 침수 및 보행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뿐 아니라 악취·해충 등 2차 피해를 유발함.
- 이에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빗물받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한편, 2024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빗물관리 조례”라 한다)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

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,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됨.

- 빗물관리 조례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침수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·포괄적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, 본 조례안은 도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빗물받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여,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**<조례(안) 비교표>**

구분	빗물관리 조례	본 조례안
목적	○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침수·하천홍수 예방 등 종합적인 빗물 관리정책 추진	○ 도로 빗물받이의 정비·점검·청소 등 빗물받이 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추진
대상시설	○ 빗물침투시설, 빗물저류시설, 비점오염 저감시설	○ 빗물받이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빗물받이, 건축물관리자, 공공하수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빗물받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, 침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적용범위)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 받이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.

- 안 제5조(유지관리계획 수립)는 빗물받이 현황, 점검·청소·준설 계획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- 안 제6조(빗물받이 관리)는 상습침수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, 악취저감장치 도입, 전담관리자 배치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을 명시하고,
  - 구청장에게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건축물관리자에게도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,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홍보 등)는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와 무단 덮개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, 주민에게 공공시설물 보호 의식을 높임으로써 빗물받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8조(협력체계 구축)는 빗물받이 청소와 상시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공공·민간의 협력을 통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도로 침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‘빗물 받이’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 구청장

에게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할 책무를 구체화하고,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에 빗물받이 추가 설치, 주민 참여 및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- 아울러 주민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주민의 공공시설물 보호 인식을 높이고,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로침수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고 자료

1

## 하수도법

###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 · 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·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2.12.27>

### 제4조의4(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)

-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(이하 "공공하수도관리청"이라 한다)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중점관리지역

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

-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, 우수토실, 맨홀,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,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

## 지방자치법

###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  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